건설산업기본법 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9. 2007고합877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김성훈

【변호인】법무법인(유) 태평양외 3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2를 징역 8월,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 4로부터 19,800,00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1, 3, 피고인 5 주식회사 및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